

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 건설도시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2월 16일, 박승직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2월 1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(2024년 2월 27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박승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회복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전세사기피해 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사업에 관해 규정함(안 제6조).
-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.
- 국가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(안 제8조).

4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남기호)

가. 조례제정 목적

- 전세사기 등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교육 및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, 안 제2조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도지사의 보호대책 수립 책무에 관해 규정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 사례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, 긴급주택지원, 이주비 지원, 긴급

생계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안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-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」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 받는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,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- 본 제정 조례안은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,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,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예방 교육 및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참고 1

시·도별 조례 현황

건설도시국

시·도	조례명	제·개정일자	비고
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	제정 2023. 10. 4.	조례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	제정 2023. 8. 16.	조례
대구광역시			
인천광역시			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	제정 2023. 9. 25.	조례
대전광역시			
울산광역시			
세종특별자치시			
경기도	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	제정 2023. 7. 18.	조례
강원특별자치도	-		
충청북도			
충청남도			
전북특별자치도	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	제정 2023. 11. 10.	조례
전라남도			
경상남도			
제주특별자치도			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6. 토론요지: 없음
7. 수정안의 요지: 없음
8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